

#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박수혁\*

## 차 례

- I.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 II. 유역관리에 관한 법령 및 문제점
- III.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 IV. 가칭 “유역관리위원회” 설치 제안
- V. 유역관리 조직의 활성화 방안
- VI. 맺는 말

## I.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 1. 유역관리의 연혁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유역관리는 정부집단의 강제적인 규제가 주된 내용을 형성하였다. 1998년 한강물관리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낙동강대책, 2000년에는 금강대책과 영산강대책이 수립되어 전국의 주요 4대강 및 상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등 대규모 유역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여 현재 사업초기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역관리대책들은 관리대상인 유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원 원인규명 및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어 대상지역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환경학자, 시민단체, 지방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유역관리는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는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유역의 범위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행정구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관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공동체영역 즉, 유역관리센터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시행이 필요하며 또한, 유역관리 정책시행시 이들 조직내 유역구성원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역은 범위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행정구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유역관리조직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유역관리 정책시행시 유역관리 조직내 유역구성원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1)</sup>

## 2. 유역관리의 현황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의 물 관리 종합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수질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관리 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 2005, 3면.

관련 정책과 건설교통부 중심의 수자원 이용 및 홍수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량 관리가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물자원은 특정수계의 유역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계 등의 자연자원들도 포함하는 유역단위에서 통합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4대강 특별 대책은 본격적인 물자원 통합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유역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는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부분의 유역의 범위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행정구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관리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유역관리조직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수행이 필요하며, 유역관리 정책시행 시 유역관리 조직 내 유역구성원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물관련 보고서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유역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역관리 조직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 추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유역관리를 위한 체계가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유역관리의 특성이 문화사회적인 여건, 기존 물관리 체제의 특징, 관리대상 또는 문제의 특징, 유역크기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유역관리조직을 통한 유역관리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유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자연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 주민의식, 관리의 분야 및 목적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법칙이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역관리에 있어 효

율적인 관리조직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유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유역 참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분권적 의사결정,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자율적 물환경 개선 추진 등 유역관리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유역구성원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실천행동을 수반하고자 유역참여센터라 명명한 기구의 설치를 검토·추진하고 있다.<sup>2)</sup>

〈표 1〉 우리나라 유역현황<sup>3)</sup>

	중권역	소권역
전국	117	840
한강대권역	30	289
계획수립주체	유역(지방)환경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중권역 및 소권역(단위유역) 현황은 부록 참조

## II. 유역관리에 관한 법령 및 문제점

### 1. 유역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

〈표 2〉 수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p>4)</sup>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관장부처
수량관리 (하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물·기타천연자원의 이용·개발</li> <li>▪ 수해·풍해 기타재해의 방제</li> <li>▪ 국토조사(자원조사)</li> </ul>	건설교통부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의 관리</li> <li>▪ 하천공작물의 설치</li> <li>▪ 하천 유수점용허가</li> </ul>	건설교통부

2) 박배경, 앞의 논문, 12~13면.

3)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한강대권역 관련-, 2006. 8. 4면.

4) 박수혁, “물 관계법률의 검토-최근의 동향과 개선방향” 한국토지법학, 2000. 12, 76면 참조.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관장 부처
수량관리 (하천)	특정다목적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 댐 건설</li> <li>▪ 다목적 댐 관리</li> <li>▪ 댐사용권</li> </ul>	건설교통부
	지하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 조사</li> <li>▪ 지하수 개발·관리</li> <li>▪ 지하수 수질보전</li> </ul>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하천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 정비·이용·관리</li> <li>▪ 소하천 보전</li> </ul>	행정자치부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용수개발</li> <li>▪ 공유수면 이용·관리</li> </ul>	농림부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개발사업</li> <li>▪ 발전용댐 건설 등</li> </ul>	산업자원부

〈표 3〉 재해관리에 관한 법률<sup>5)</sup>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관장 부처
재해관리	자연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기본계획 수립</li> <li>▪ 풍수해 예방</li> <li>▪ 구호 및 응급복구</li> </ul>	행정자치부
	농어업 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재해예방 및 대책</li> <li>▪ 응급복구</li> <li>▪ 재해피해보조 및 지원</li> </ul>	농림부

〈표 4〉 수질 및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관장 부처
수질환경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준의 설정</li> <li>▪ 특별대책지역의 지정</li> <li>▪ 환경보전 장기계획 수립</li> </ul>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li> <li>▪ 배출허용기준 및 시설허가 관리</li> <li>▪ 공공수역 및 특정호소 수질보전</li> <li>▪ 폐수종말처리장 설치</li> </ul>	환경부

5) 박수혁, 위의 논문, 77면 참조.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관장 부처
수질환경 (환경)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구역의 지정·관리</li> <li>▪ 토지등의 매수</li> <li>▪ 주민지원사업</li> <li>▪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li> <li>▪ 한강수계관리위원회</li> </ul>	환경부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도 정비</li> <li>▪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li> </ul>	환경부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li> <li>▪ 분뇨처리시설의 설치</li> <li>▪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li> </ul>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li> <li>▪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처리, 이용촉진, 공 공처리</li> <li>▪ 가축분뇨 관련 영업</li> </ul>	환경부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기본계획</li> <li>▪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li> <li>▪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li> <li>▪ 먹는 물의 수질 기준</li> <li>▪ 급수시설의 위생관리</li> </ul>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 물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li> <li>▪ 먹는 샘물 제조허가 등</li> </ul>	환경부

## 2. 현행 유역관리 조직의 문제점

### (1) 유역관리 단위의 문제점

물관리가 유역단위가 아닌 행정단위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역 물관리 측면에서 물관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담당 공기업 등 관련기관 등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주민, 사회단체 등 관련 이행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 (2) 유역관리 법체계 관련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유역관리 및 하천관리라 관련된 법률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률들의 소관 업무가 서로 상충되어 업무의 혼성을 초래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물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원인이 복잡적이어서 개별부처가 주관하는 조정절차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 (3) 유역관리 조직체계의 문제점

현 물관리 체계는 건교부의 국토개발정책과 용수공급/홍수조절, 환경부의 환경보전정책과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농림부의 농업용수의 확보 등 각 부처에서 부처의 고유 업무에 관련된 물관리 기능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의 부처별 분산관리체계는 필요시 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상 통합관리는 업무중복해결 행정 효율성 증대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업무효율의 저하와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

## (4) 유역구성원의 참여의 문제점

유역관리를 통한 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다. 지금까지 물관리 계획은 중앙 관련부처 내 소수의 행정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수립되고 공청회와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되고 공청회와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는 전형적인 상하(top-down)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역 이해당사자들이 물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개발과 보전간의 중요도에 차이 등을 나타내어 격렬한 반대를 한 예를 통해서 물관련 계획의 수립에 유역 구성원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행 당사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 (5) 유역관리 지원도구의 문제점

유역구분도, 기초조사, 정보화 등의 물관리 지원도구가 분화된 관리체제 하에서 특정부문의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통합적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III.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물관리 체계에 관한 중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물관리를 크게 하나로 통해서 주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의 조직을 잘 다듬어 보완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7)과 최지용(1996)은 건설교통부에서 행해져오던 수량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량·수질업무의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고 김종원(2000)은 유역차원에서의 통합관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집행기능을 유역 당국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지침, 기술적 지원 등의 정책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이 편중되어 있어 수자원의 관리가 어렵고 수질과 수량관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역 물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수량관리의 기능과 연계하여 수질 및 생태계의 보존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사정과 자연환경과 지역적 불부족 또는 불피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배분하여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할분담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역할분담을 유지한다는 기초 아래 중앙, 지자체, 각 부처 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국토 계획 하에 조율하여 기존에 제시된 유역의 상 하류간의 개발문제, 수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기관간, 부처간 애매한 업무영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역관리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역 내 토지 이용계획, 산업의 배치 및 업종의 선택 등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물관리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수량의 부족과 수질 오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 즉 주민, 사업자, 농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계획,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유역관리는 기존의 관리시스템에 비해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내용상 통합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 과학적인 평가, 객관적인 우선순위의 설정, 이해당사자의 이견 조정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역관리 체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국적인 물관리(유역관리) 기준(법령)의 제정

유역관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역관리법이나 물자원법과 같이 물 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에 유역관리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역단위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유역관리법’에서 유역관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국가의 경우에는 유역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지침’을 승인하면서 자국의 정책에 유역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은 하천법, 지하수법 등을 포함하여 12개, 수질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등 9개, 기타 물자원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11개의 법령이 있다. 이러한 개별법 중 유역관리의 개념은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유역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도 이외에는 행정구역 단위의 단위 목적별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물부족 또는 물피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배분하고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2.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 도입

유역단위의 물 관리 실무기구를 운영하여 홍수 및 가뭄대책, 수질감시 및 저감대책,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산업 유치 등의 물관리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행정기관,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지역 전문가, 지역사업가 등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하천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도입을 요구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통합성 : 한 가지 환경문제를 단편적인 접근방식에 의하지 않고 유역 내의 원활한 물공급, 수질개선, 생태계 보전 등의 문제 등을 다양한 문제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 연계성 : 용수공급이나 홍수통제 뿐 아니라 생물서식지, 오염예방, 수질 등의 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량과 수질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 이해당사자 집단의 참여 :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 전체를 대상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 지속가능성을 목표 : 통합적 유역관리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책,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 부처간 협력과 조정 : 하나의 유역은 여러 정치 행정 구역을 포함하므로 모든 수준의 정부간 또는 정부내 기관간의 대화, 협력, 이해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 유역관리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지속적·체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역의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목표 또는 비전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체계적 교육과 홍보 : 통합적 유역관리에서 인간이란 생태계 구성요소가 가장 다루기 힘든 오염원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생태학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3.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

유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제한된 재원을 유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의 공유는 해당유역의 문제를 주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유역관리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당사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공동작업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4. 유역관리체제의 단계적 추진

체제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체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요구된다. 초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좀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도록 한다.

### 5. 유역관리 지원도구의 개발

효율적인 통합유역관리체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기초 자료가 유역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행정구역 단위로 취합되는 기존의 환경관련 자료들이 유역단위로 재분류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부분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유역 또는 소유역 차원에서 유역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역차원의 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특징과 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한 물관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역단위의 물정보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유역단위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통합시

스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6)</sup>

## 6. 물관련기본법(안)의 취지 및 내용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 물관리기본법안을 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부처별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물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간 갈등 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물관리기본법은 첫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토록 하여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하였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심의를 지원토록 할 계획을 마련하였다.<sup>7)</sup>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관리 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 2005, 88면.

7) 이충기, 수자원확보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14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해의 예방 등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적합하며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물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무가 있다.

**제8조(유역별 관리의 원칙)** ① 물은 지속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별(水系別)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수계별 유역의 범위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관리의 원칙)** 물관리는 물순환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관리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의 예방·복구 등 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8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2.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5.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의 예방
6.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7. 유역별 물관리계획의 기본방침
8.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무총리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경제·자연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후 5년이 되는 해에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유역별 물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이하 “유역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2. 유역의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3. 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개선
4. 유역의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의 예방
5. 유역 하천 주변의 활용과 보전
6.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보고하는 유역별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통

합·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국가물관리위원회)**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중앙행정기관 간,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의 물관리에 관한 이견의 조정
3. 전국 또는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물관리 계획의 수립과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IV. 가칭 “유역관리위원회”설치 제안

##### 1. 유역관리위원회의 개념

유역관리위원회제도는 수자원 관리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유역이 담당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즉 중앙정부 외에 강연안의 특별시, 도, 광역시가 만나는 장소가 유역관리위원회가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능한 그대로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연안의 도와 시(특별시, 광역시)가 공동으로 강을 관리한다는 정신을 함께 하고 공동의 강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유역관리위원회이어야 한다.<sup>8)</sup>

##### 2. 유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유역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인준한 대표자와 유역의

---

8) 최연홍, 4대강 유역관리위원회의 제안, 한국수자원학회지, 2004. 11. 96~98면.

도지사, 시장이 임명하고 도의회, 시의회가 인준한 대표자들이 모여서 연안의 수자원관리 즉 수질, 수량, 환경,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정책결정을 만들고 전문경영인이 사무국의 운영을 맡는다. 대표자들은 이사회에 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의 다수결로 만든 정책을 사무국장이 전문인 직원들과 집행한다.

이사회는 기능은 유역의 총체적 수질, 수량, 환경, 레크리에이션 관리 목표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아래 분야별 소위원회가 전문가, 시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안한다. 사무국은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 시행한다. 또 이사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물 배분을 매년 강우량의 과다에 따라 정하고 사무국은 그 결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도시를 돕는다. 사무국은 유역에 위치한 정부들에게 언제나 기술적 지원과 제한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과학, 공학, 기술의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는 원칙과 전통을 세워 나간다.

신설되는 유역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시장들이 직접 구성원이 되는 경우와 달리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대표자(이사)들을 임명하며, 국회입법이 설치근거이지만 환경부장관의 지휘체계에 있지 않고, 이사회가 선출한 대표자가 임기동안 최고 책임자가 된다. 그들은 강에 관한 전문가들인 과학자, 공학자, 계획가, 행정가들이어야 한다. 위원들은 수자원 관련 분야의 학자나 환경단체회원, 공무원일 수 있지만 현직 장관이나 도지사,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는 아니다. 유역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물 가버너스 체제가 될 것이며 수자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무국은 물의 관리에 불필요한 정치나 정당적 참여를 배제하는 운영의 묘를 보일 것이다.

유역관리위원회는 유역의 수질, 수량에 관한 정책을 만들며 정책집행이 목표한 대로 수행되도록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연안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한다.

〈표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의 비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제24조)	유역관리위원회(시안)
1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①중앙정부 대표자, 연안 지방정부 대표자 ②서울, ③인천, ④경기도, ⑤강원도, ⑥충청북도 (물 관련 공무원, 학자, NGO) (Observer 참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무국 사무국장(Professional Manager) 20~30정도의 staff
2	수변구역의 지정관리(제4조)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제5조) 토지의 매수(제7조) 오염총량의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제8조) 주민의 지원 재정(제11조) 수질 개선사업(제13조) 토지의 수용(제14조)	왼쪽표 내용과 같음 미래 유역 물수급 예측과 계획 가뭄기 물의 배정
3	-	수량관리(수리권) 물의 배분 ①서울, ②인천, ③경기, ④강원도, ⑤충청북도
4	수질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제16조) 수질개선 특별위원회의 세입·세출(제17조) 세입 : 1. 국가 또는 사도의 보조금 및 지방 잉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차입금 3. 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차입금 5. 수입금	유역관리기금 (기금의 할당공식에 필요한 요인) ①인구수, ②도시의 평균소득 ③오염 부하량, ④유역면적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제19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제20조) =물이용부담금 + 국가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채원 + 기금운용 수익금	왼쪽과 같음 중앙정부의 물이용금대청자금 설치
6	환경감시조직(제26조)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제27조) 지방정부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	환경부, 건교부, 도, 시의 종합적 감사

### 3. 유역관리위원회의 재정

유역관리위원회의 재정은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유역의 미래수급계획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댐을 건설한다. 또 상류, 하류지역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물의 배분을 결정하는 등 연구, 조사 분석의 업무와 계획의 업무를 실행한다. 이런 일은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예를 찾아보면 포토맥강 유역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200만 달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의 연간예산은 400만 달러다. 이 위원회들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4. 유역관리위원회의 발전방향

유역관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강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 관리가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나 독점물이 아니라 유역의 도와 시가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도 함께 소유하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성공한다. 가능한 기존 정부기구를 활용하면서 유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자, 계획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V. 유역관리 조직의 활성화 방안

### 1. 주민의 참여증진

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주요 사업 중 기타 수질 개선사업 분야 중의 하나인 민간수질감시 활동 지원사업은 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각 시도와 유역환경청에서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민간수질 감시활동 지원사업의 주된 지원사업 내용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범국민

(주민)적인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과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한강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수질 감시활동 지원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는 85개의 단체에서 107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경우, 유역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의 단체의 여러 지부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역청의 사업지원창구가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의 단체가 우선 환경부에 허가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 상수원관리지역내의 경우 환경부에 허가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역청의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비의 배분 비율로 볼 때 보다 더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단체들에 대한 나눠주기 식의 사업지원보다는 한강상수원 유역관리와 유역주변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수의 사업을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00천 유역공동체(가칭)’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역관리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사업의 주된 활동내용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 사업, 유역문화 형성 및 유역공동체 형성사업이다. 이는 민간수질 감시활동 지원사업비의 운용목적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비를 유역관리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특히 ‘00천 유역공동체(가칭)’ 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역공동체의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유치를 지원하는 비용, 또한 이들 공동체를 네트워킹하여 유역관리참여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그리고 물 포털 사이트 구축사업 등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비를 운용할 경우, 비록 다수의 소유역공동체 조직들이지만 같은 목표(방향성)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원 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홍보·캠페인 활동 사업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단체에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인 수계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몇몇 사업을 선정한 후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본 연구의 핵심인 유역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국내의 사례와 해외 사례를 볼 때 그 운영경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 자체 회원의 회비에 의한 충당과 더불어 초기의 구성 및 안정화시기에 도달할 때 까지는 이들 재원에 의한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정보를 나누고, 갈등하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정보전달을 위한 방법,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 양자간의 대화를 위한 방법들로 나뉘 볼 수 있다.

## 2. 파트너십

유역관리는 지역적·계층별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경계와 같은 지리적인 경계가 무시되어야 하고 영향권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행동해야 한다. 또한 주민뿐 아니라 유역관리와 관련된 관계자 그룹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유역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유역구성원 그룹별로 효과적인 상호협력에 따른 파트너십이 매우 필요하다. 즉, 계층별, 지역별, 역할 그룹별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유역구성원간의 파트너십 형성은 매우 중요한 기본 바탕이다.

효과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필수요소들은 공동의 관심에 집중하기,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기, 서로에게 감사하기, 상대방의 요구와 입장을 이해하기, 신뢰를 구축하기 등으로, 파트너십의 핵심은 멀리 떨어져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라 가능한 모든 관계자들을 한 방에 모으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파트너들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유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여 공통의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적합한 모든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며 구성원간에 있을 지도 모르는 반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역내 핵심적 관심사들을 대표하여 다룰 수 있는 규모의 파트너십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

### 3. 유역관리 네트워크

유역관리네트워크는 유역구성원들간의 참여, 협력과 실천을 통하여 유역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 유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유역 단위의 자생적 물사랑 실천단체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유역관리에의 참여와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천소하천 등 소유역 단위의 ‘민간 물사랑실천단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교육 홍보, 하천변가꾸기 등 유역관리 실천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소유역 단위의 물사랑실천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소유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험·정보교류 및 유역관리 실천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역관리 네트워크는 자생적 단체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므로, 충분한 환경관련 민간의 자생적 단체의 존재와 이들이 관과 협력하려는 자발적 자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충분한 환경관련 민간 자생조직이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에 대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4. 정부의 역할

통합적 물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역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현재 물 관련 자료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21개 주요 항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이

다. 이러한 수량·수질 등 물관리정보화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부처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련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방법과 시기를 비롯한 코드체계, 정보제공 및 운영체계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는 자료의 일관성·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물수지 분석, 수질예측모델링, 오염원총량규제 등을 위한 수질·수량자료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 VI. 맺는 말

현행 유역관리는 유역단위가 아닌 행정단위별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역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다. 게다가 유역관리시 필요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 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유역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행정단위가 아닌 유역단위의 물 관리 실무기구를 운영하여 홍수 및 가뭄대책, 수진감시 및 오염저감대책,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 등의 물관리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유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은 첫째, 전국적인 유역관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하며 셋째, 일반 대중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또 유역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배해 온 수자원 관리를 유역으로 돌려주는 유역관리위원회 도입이 요구된다. 유역관리 조직은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배경, 우리나라의 유역관리현황과 공동유역체(유역참여센터).
- 박석순, 통합유역관리의 도입과 발전 방향, 환경시민연대, 2000.
- 박수혁, “물 관계법률의 검토-최근의 동향과 개선방향” 한국토지법학, 2000. 12.
- 이충기, 수자원확보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 최연홍, 4대강 유역관리위원회의 제안, 한국수자원학회지, 2004. 11.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관리 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 2005.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방안 연구, 2003.
-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한강대권역 관련-, 2006. 8.

<Abstract>

### **A Legal Study for Improvement of the Basin Organization**

Park, Soo Hyuk

Current basin management of our country is operated by administrative unit, not by basin unit. Also the law of basin management is broadly divided in some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reover, we are lack of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that are necessary for basin management. To improve this situation, we should establish a fundamental law on the basic thing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Currently the fundamental law of water management which can be a evidence of basin management i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by operating an organization for practical affairs of water management by basin unit, flood/drought measure, water examination&antipollution measure, development plan & land use plan and industry luring business should be carried out. Also, in order to manag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an be caused while establishing and practicing drainage basin management, every interest parties should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short, the plan to improve basin management organization is, First, we should make a standard of drainage basin management among the whole country. Seco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every valley unit. Thir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s required. And an integrated administrativ eorganization is necessary that can support the basin management efficiently. In concrete, as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controlling water resources until now, the introduction of basin management committee is necessary so that the basin units can manage

themselves. Moreover, basin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get more active by partnership and building network.

주 제 어 : 유역관리,물관리기본법, 유역관리위원회, 주민참여, 파트너십, 유역공동체  
Keywords : Water Framework Directive, Total Catchment Management(TCM), Mersey Strategy, Clean Water Act(CWA), Bridging the Watershed(BTW)